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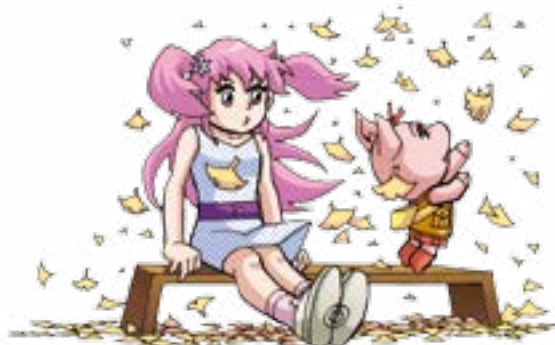
차 례



세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일까?	11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15
지방세는 어디에 내야 하나?	21
거둬들인 세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살림살이에 쓰여질까?	24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누가 살피나요?	26
잘못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31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34
지방세! 성실납부해야 우리 고장이 행복해집니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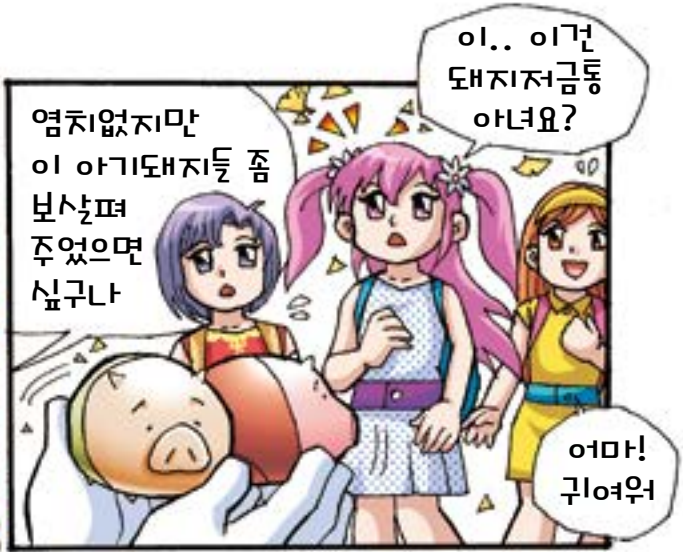
부 록

1. 구제제도	50
2.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52
3.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53
4. 지방세 세율일람표	55
5. 지방세	58
6. 국 세	61











떡볶이 4개하고
어묵값을 더하면
4,500원



남은 2,500원은
돼지저금통 속으로..

헤미야,
웬 저금통
이니?



응, 학교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맡기셨어



그럼 이제 저금통
채울일만 남았네



응, 엄마! 이참에
용돈을 올려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동전을 저금통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란다.

왜요?



지폐만 쓰다보면
시중에 동전이
모자랄거 아니니?

그럼 나가에서 다시
동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엔 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취득세?

자동차세는
또 뭐야?

영?

검색해보라도
어겨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많이
어겨워?

응!

봐도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어

?

누... 누구...?



그것보! 내가
놓갈거랬잖아.

무어때?
어차피 알게
되련데....

바보야!
자연스럽게 나타
나야 안놓라지.

돼지가
말을 한..다

엄마, 아빠
아무개도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봐요..

저..
먼저가요



이왕 들킨거
빨리 변신방귀를
쓰자!

변신방귀?
그건 또 뭐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변신!

우웩!
똥냄새!



방귀귀랬지
똥싸랬냐?

안녕

미..미안
과약근조절
실패..



아.. 안녕,
난 세돌이야.

민망하지만
난 세순이!

아하하하



세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쪼끔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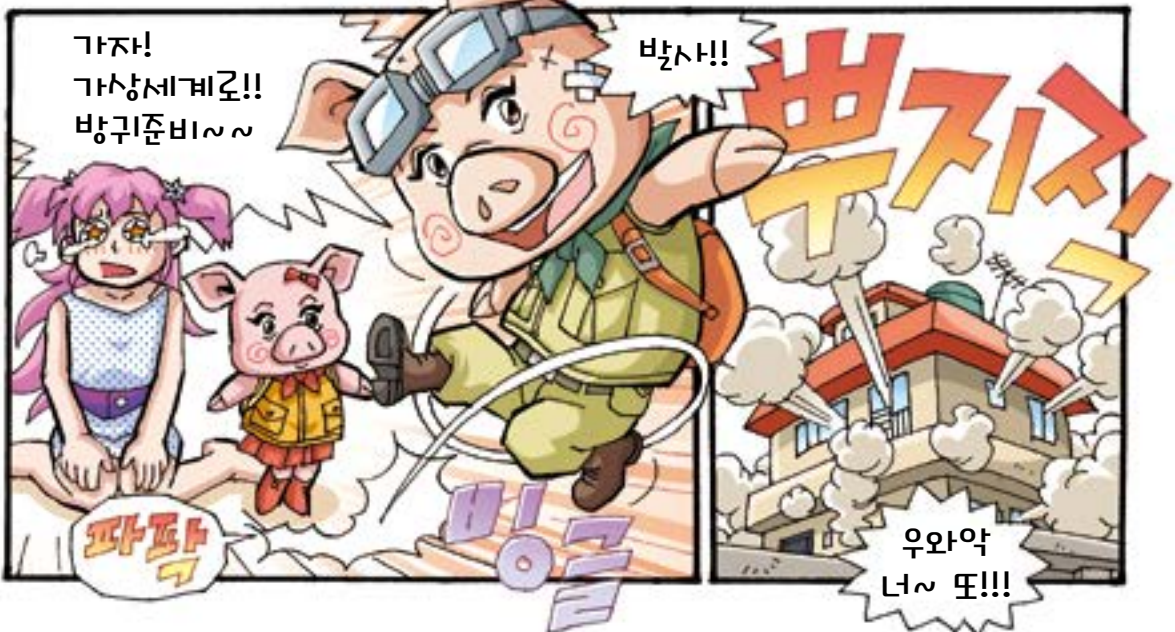


그.. 그럼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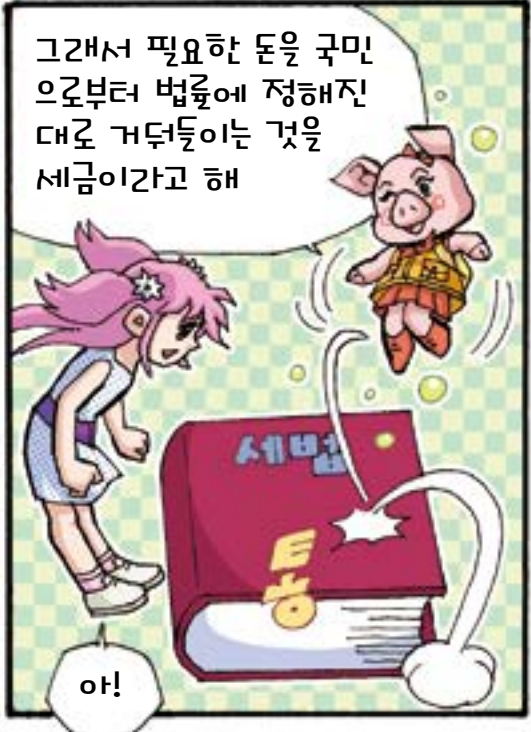
그 아이들은
평범한 돼지들이
아니란다.

사실이었어



세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일까?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곳저곳
피해를 입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또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야.



예를 들면 쾌적한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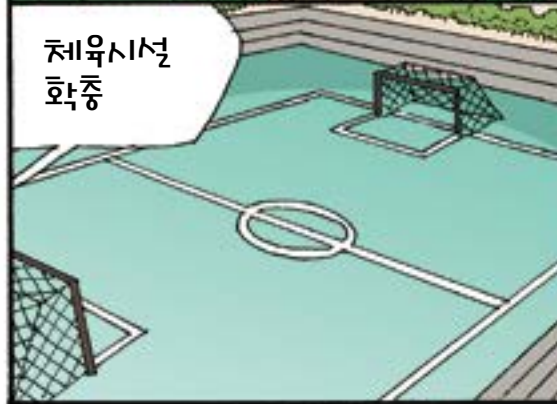
도로, 공원, 소방,
하천 등 정비



학교 짓는 일
급식비 지원



어려운 사각(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체육시설
확충



유적지 등 관기 및
문화행사 등



살기 좋은
우리 고향으로
말이야.

이
담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 국세는 개인 또는 법인(예 : 00주식회사 등)이 매년 벌어들인 연간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내야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의 종류가 있어.

국 세 의 종 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참! 국세보다는 헤미가 궁금해하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 지방세를 알아보아야겠구나

지 방 세 의 종 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는 모두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것이 세금이야.

와~~ 세금 종류가 정말 많구나

이제 세목별로 조금씩 배우볼까?

쨍긋

취득세란 무엇일까?

자동차나 땅, 집(아파트),
빌딩, 공장, 비행기, 배 등을
샀을 때 내는 세금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연세액을
매년 6월, 12월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납부



재산세는
우리 아빠에게
해당도 못했다.



재산세

재산(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7월, 9월 납부

-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아파트)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30일까지 납부 : 토지, 주택(아파트)의 1/2



주택(아파트)



빌딩



공장



선박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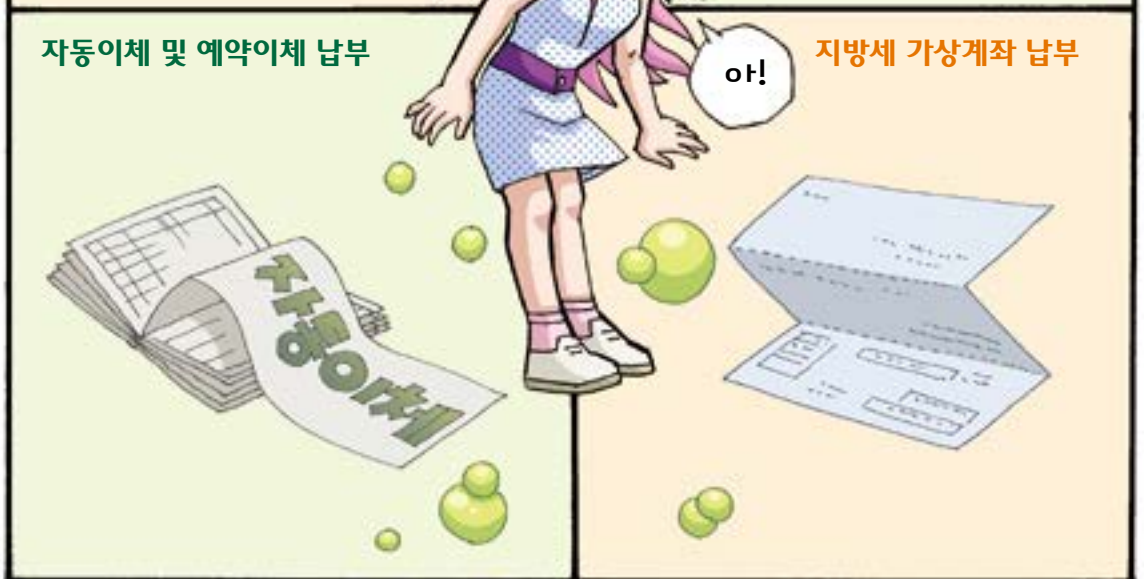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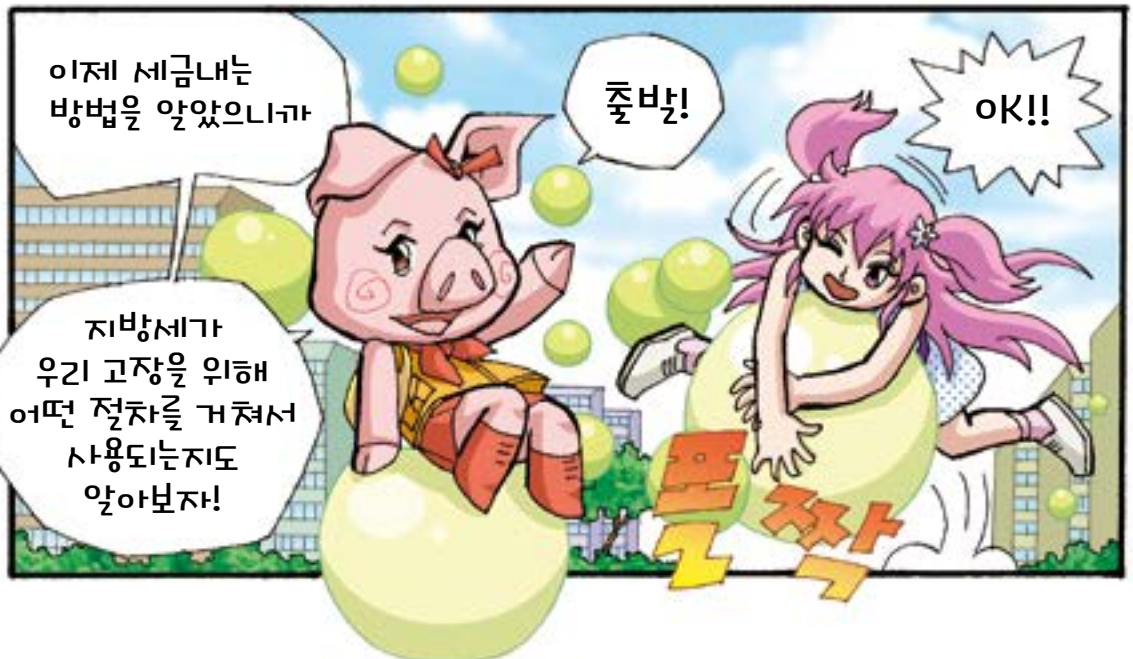
토지(땅)



지방세는 어디에 내야 하나?







거둬들이는 세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살림살이에 쓰여질까?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



예산안 심의결정 후 통보



지방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간계획에 따라 사용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교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야



그렇게 결정된
세금은 함부로 사용
해선 안되겠네

물론이지.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진
지방세는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 등 주민을
위해 한 푼도 남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아~



우리 지역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적 등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잘 관리되고
깨끗하게 보존하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되겠지.

세금이 월바르케
 쓰여지는지 누가
 살피나요?



묻어볼게
 있는데...?



뭔데?



ㅋㅋ..



금강산도
 식후경이었는데
 저기서 뭐좀
 먹자.



자~!
 떡볶이 나왔어요.

터
 쿵



우와~
 맛있겠다.



그래.
묻고 싶은게
무야?



그 지방세가 적은 돈이
아닐텐데 누군가 정상적으로
쓰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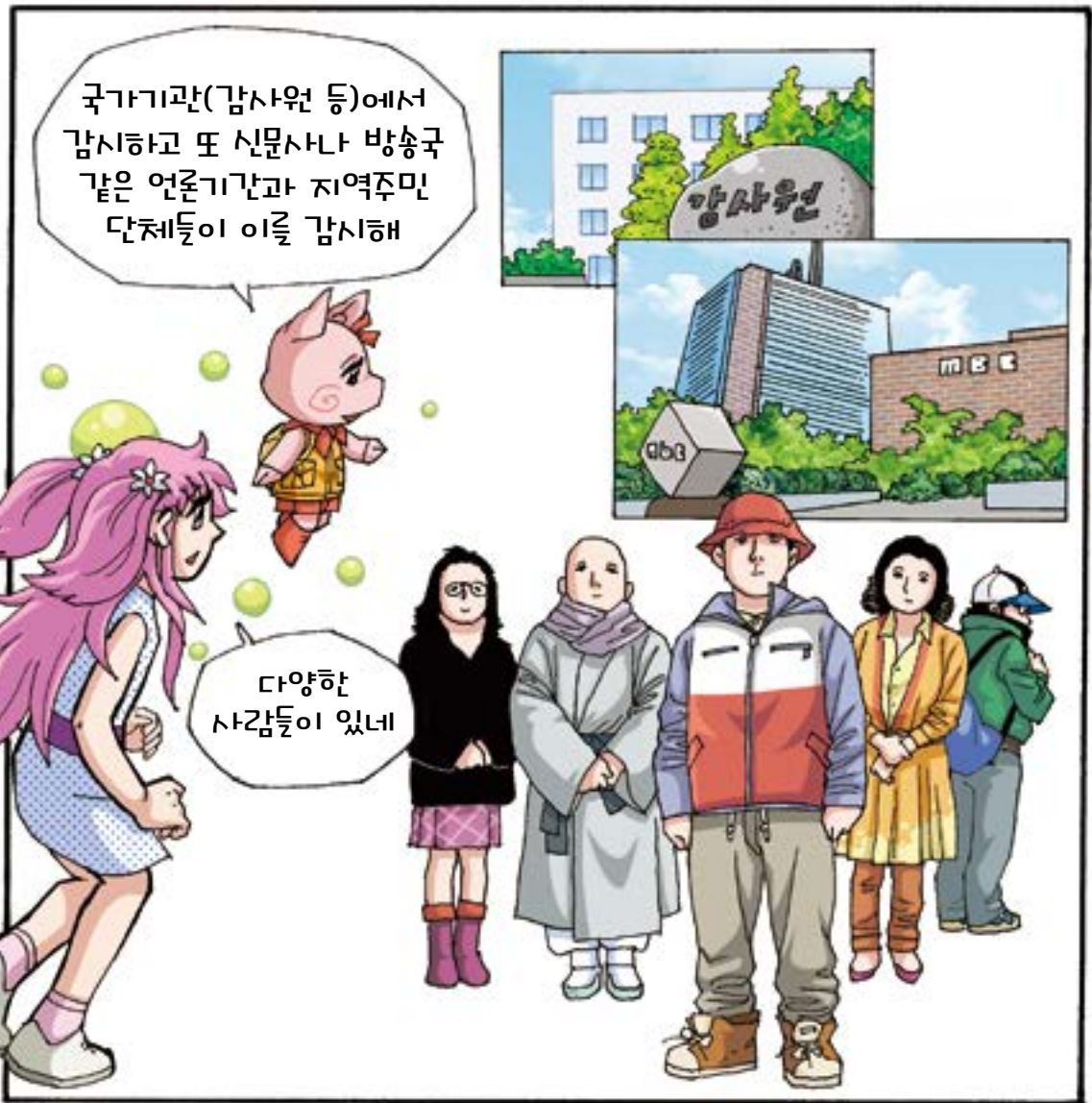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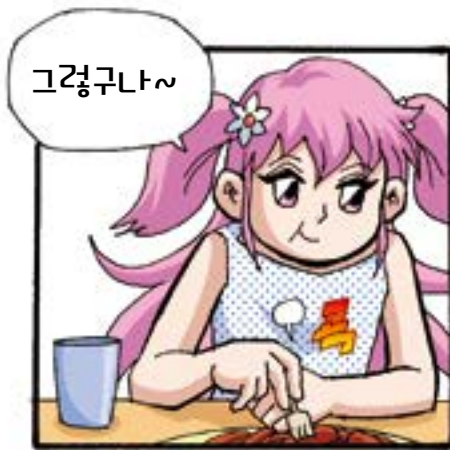
그래



국가에서 우리 고장에
지원해 준 돈과 지방세를 합해
우리 고장 살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예산)가
짜이게 되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고장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감사를 통해
감독해.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헐세라고 해. 피쳐검 고귀하다는 뜻이야.. 그러니 함부로 낭비해선 안되겠지?



아주머니 제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나머지 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고 하니 우리도 나가자.

으



그런데말야. 조금전 식당에서 음식값을 잘못계산한 것처럼 세금이 부당하게 나왔다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지?

다~~ 방법이 있어



잘못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잘못 과세된 세금고지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한 시·군·구청장이나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나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



이의신청 결과통지



잘못·과다 부과된
해당 금액 반환
(납세자)



또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잘못을 가리기도 해.



이게 바로
지방세
구제제도야.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조금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제도네



야~~ 험미도
이제 세금박사가
다됐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한것 같아

그건 세금은
내도 그만,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거야? 설마
경찰아저씨들에게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만..

기웅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어어어..
중심잡기가
힘들데?



이제 천천히
몸을 앞으로
밀면 돼

오아
신난다!



그런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산금이 붙어

가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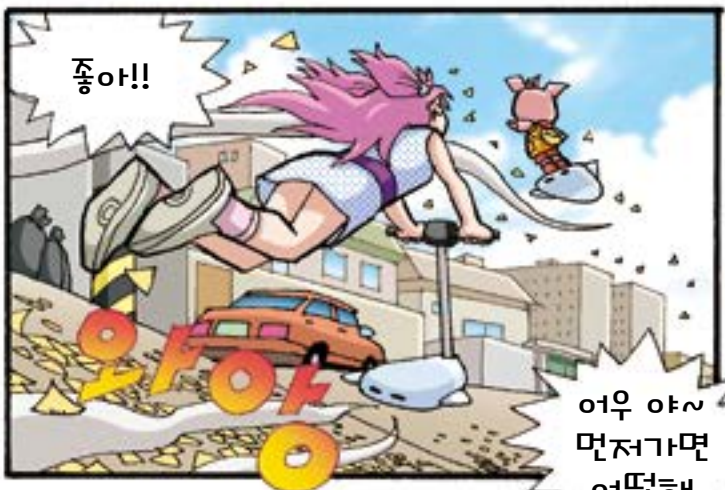
가산금이
뭔데?



가산금이란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내지 않을 경우
원래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이야



세금을 낼 날짜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월 1.2%씩 5년간
 총 75%까지 붙게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아저씨
왜 울고
계세요?

글쎄..
세금을 안냈다가
이렇게 집을
압류당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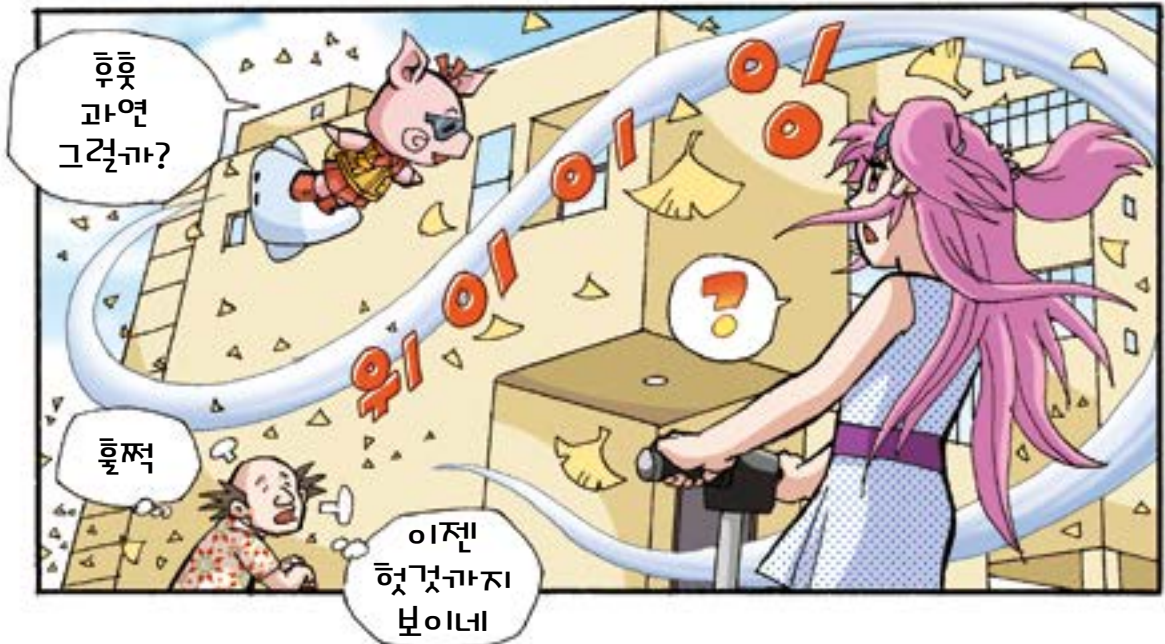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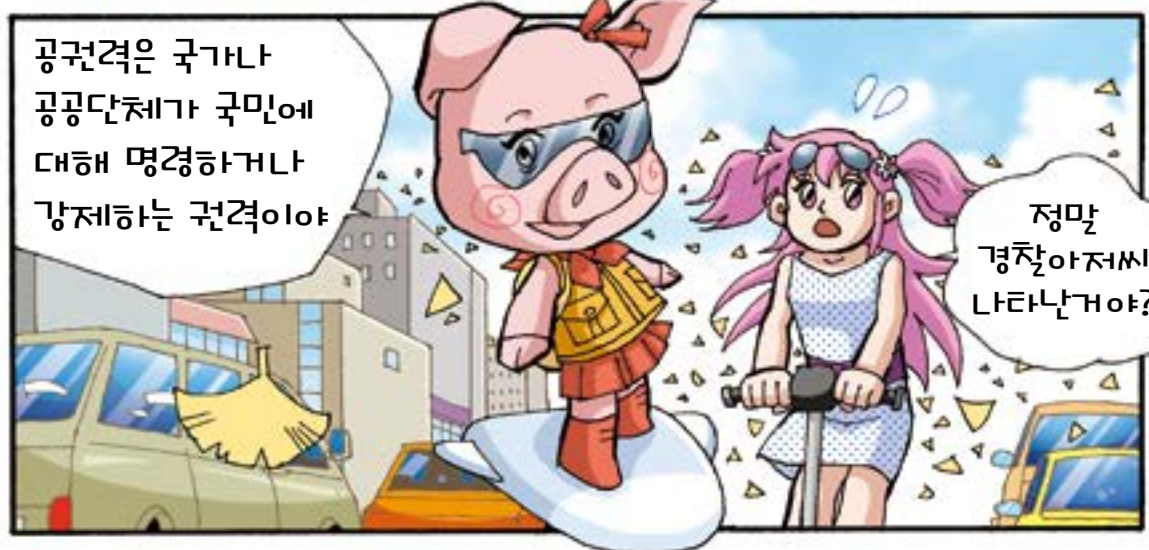
평생모든
재산인데



세금을 못냈다고
그런거야?

이

















지방세! 성실납부해야 우리 고장이 행복해 집니다



아침부터
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응!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거..



아~ 집, 땅, 자동차
등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말이죠?



그거니까요..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고
제때 안내면
어쩌구.. 저쩌구

허어! 우리 혜미가
지방세 박사가
다됐네 그걸!

막
쓰다듬어
주세요



대단해

다시
보아야겠는걸

혜미가 이제
세금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었군

혜미
짱이다!



와!





부록



01 |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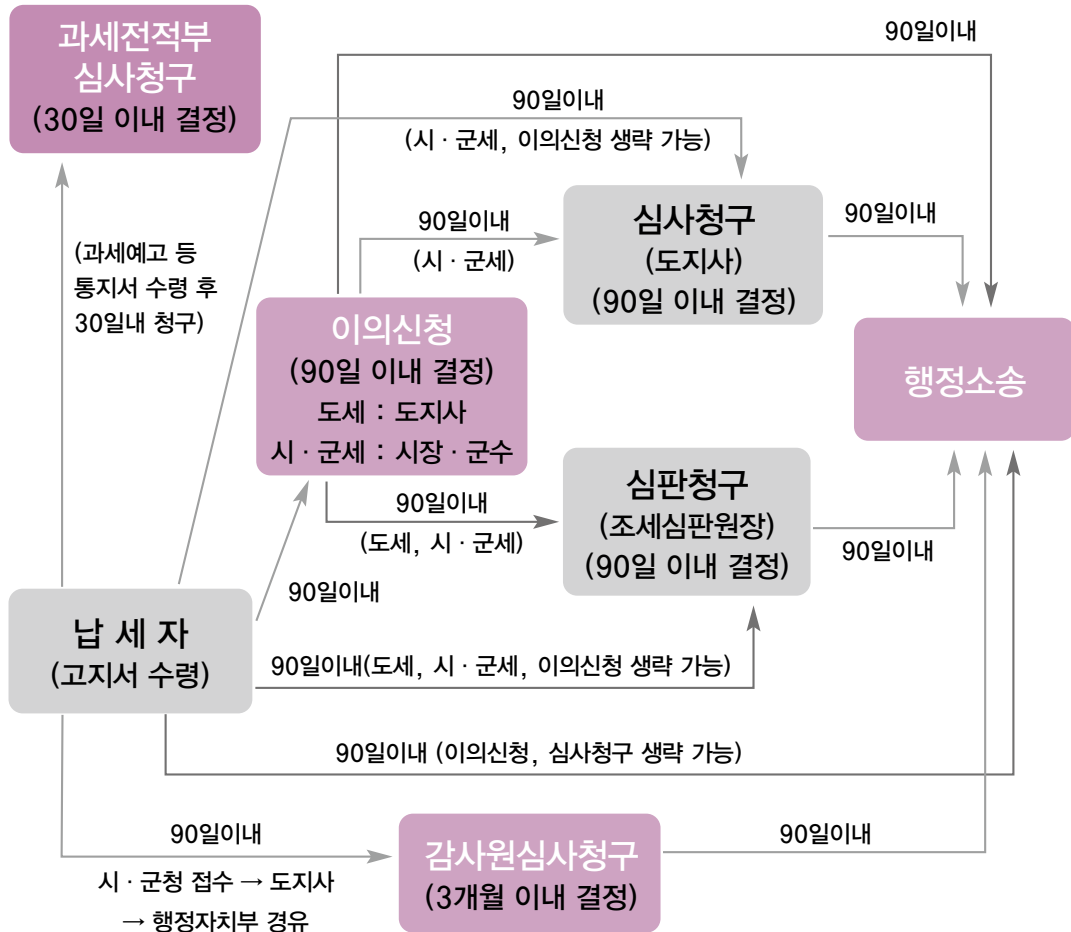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02 |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월 별	납부할 지방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 31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 31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10% 공제)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납부(3. 31까지) …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7.5% 공제)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 4. 30까지)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 5. 31까지)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6. 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5% 공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1/2) ·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 31까지) ※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 징수 •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7. 31까지)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분 주민세 납부(8. 31까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나머지 1/2) · 토지분 재산세 납부(9. 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9. 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2.5% 공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12. 31까지)
매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 주행분 자동차세 : 25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매분기 익월말일까지

03 |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 기	비 고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	
등록 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 등기 · 등록하기 전	지방세법 제30조	
	면 허 분	정기분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지방세법 제35조
		수시분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43조	
지방 소비세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 5일 이내	지방세법 제71조 및 령 제76조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지방세법 제79조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6	
	재산분	신고납부	• 매년 7. 1 ~ 7. 31	지방세법 제83조	
재산세	주택 · 건축물분 (선박 · 항공기)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 (지법 제115조)	• 도시지역분 (지법 제112조) - 도시지역내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	
	주택 · 토지분	보통징수	• 매년 9. 16 ~ 9. 30 (지법 제115조)		
자동차세	소 유 분	제1기분	보통징수	• 매년 6. 16 ~ 6. 30	지방세법 제128조
		제2기분	보통징수	• 매년 12. 16 ~ 12. 31	지방세법 제128조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부시	지방세법 제137조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소득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 제95조
	법인소득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담배 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60조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 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지방세법 제152조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04 | 지방세 세율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 승계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9억원 초과		30/1,000	
	자동차	비영업용 자동차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경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선박		20~30/1,000	
	기계장비		30/1,000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선박	소유권의 보존		0.2/1,000
	차량	소유권의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500원~67,500원

레저세 (지방세법 제42조)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1조)	담배(피우는 담배 등)		20개비(1갑) 1,007원 등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9조)	부가가치세액		11/100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균등분	개인	1만원 이하(조례로 정함)
		법인, 개인사업자	50,000원 ~ 500,0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1㎡당 250원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개인 지방 소득세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법인 지방 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특별 징수분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주택		1/1,000 ~ 4/1,000
	토지		0.7/1,000 ~ 5/1,000
	건축물	골프장, 별장 등	40/1,000
		공장 등	5/1,000
		그 밖의 건축물	2.5/1,000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영 제131조)	소유분	승용자동차(연세액)	1cc당 80원 ~ 200원
		승합자동차(연세액)	2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연세액)	6,600원 ~ 157,500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특정 부동산	건축물·선박	4/10,000 ~ 12/10,000
	특정 자원	지하수	채수량 1m ³ 20원, 100원, 20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 당 1원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액		10/100 ~ 50/100
	담배소비세		4,399/10,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

05 | 지방세

◆ 취득세

사람이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차량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대상재산을 샀을 때 납세자가 취득가액(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

$$\text{※ 취득가액(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취득세액}$$

◆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

예) 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

면허 : 일반음식점 허가- 매년 1. 31까지 납부 4,500원~7,500원

◆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담배소비세

제조 또는 수입 등의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며, 흡연자가 사서 피우는 담배 가격에는 일정금액(권련 1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예) 권련담배 1갑 4,500원 중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11%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매년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주민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과세대상인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세금

예)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30일까지 납부 : 토지, 주택(1/2)

◆ 자동차세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차 등)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질과 도로손상 등 원인자부담금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액을 배기량(시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액의 세율을 곱하여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과세

예)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납부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서,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 주세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

◆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자,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회사, 그 밖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교육세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로서, 대체로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과세표준은 조세감면액, 개별소비세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다.

◆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